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용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28

발의연월일: 2020. 6. 16

발 의 자: 박용진 · 이소영 · 정성호

송옥주 · 이학영 · 용혜인

기동민 • 전용기 • 민병덕

정춘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회의원,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,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,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, 당대표경선후보자등,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후보자만 규정하고 있음.

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비를 들이거나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마련해 선거에 후보자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. 선거 후 당선이 되거나일정한 득표율을 올리는 경우에는 선거비용이 전액 또는 100분의 50이 보전되지만, 청년 등 정치신인은 선거비용 마련 또는 낙선으로 인한 금전 손해를 두려워하여 선거에 도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,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

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7호·제8호 및 제12조제1 항제6호 신설).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지역구시·도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(이하 "시·도의회의원후보자등"이라 한다)
- 8.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(이하 "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후보자등"이라 한다)

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 장후보자"를 "국회의원후보자등·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와 시·도의회의 원후보자등 및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후보자등"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"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"를 "국회의원후보자등·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와 시·도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후보자등"으로 한다.

6. 시·도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후보자등의 후원 회는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에 해당하는 금액(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시·도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후보자등의 후원회는 각각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에 해당하는 금액)

제19조제3항제2호 중 "국회의원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" 를 "국회의원후보자등·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및 시·도의회의원후보자 등 또는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후보자등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후원회지정권자) 다음 각	제6조(후원회지정권자)
호에 해당하는 자(이하 "후원	
회지정권자"라 한다)는 각각	
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	
수 있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. 지역구시·도의회의원선거의
	후보자 및 예비후보자(이하
	"시·도의회의원후보자등"이라
	<u>한다)</u>
	8.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
	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
	(이하 "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
	후보자등"이라 한다)
제11조(후원인의 기부한도 등) ①	제11조(후원인의 기부한도 등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	②
연간(대통령후보자등·대통령선	
거경선후보자·당대표경선후보	
자등· <u>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</u>	<u>국회의원후보자등·지방자치</u>
<u>방자치단체장후보자</u> 의 후원회	단체장후보자와 시·도의회의원
의 경우에는 당해 후원회를 둘	후보자등 및 자치구·시·군의회
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. 이하	의원후보자등

같다)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 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2. (생략)
- ③ ~ ⑥ (생 략)

제12조(후원회의 모금·기부한도) 지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(이하 "연간 모금 한도액"이라 하고,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한다)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신용카드·예금계좌·전화 또는 인터넷전자 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 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되, 그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

1. ~ 5. (생 략) <신 설>

없다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2조(후원회의 모금·기부한도)
①
-,
<u>.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시·도의회의원후보자등 및
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후보자
등의 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
제한액에 해당하는 금액(후원
회지정권자가 동익이의 시·도

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자치구·

② 후원회가 해당 후원회지정 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(이하 "연간 기부한도액" 이라 한다)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모금한도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하 게 해당 연도(대통령후보자등·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·당대표 경선후보자등·국회의원후보자 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의 후원회는 해당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)에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때에는 제40조(회계보고)제1항 에 따른 회계보고[국회의원후 원회는 12월 31일 현재의 회계 보고를,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 는 제40조(회계보고)제2항에 따 른 회계보고를 말한다]를 하는 때까지 기부할 수 있다.

③·④ (생 략) 제19조(후원회의 해산 등) ①·② 제 (생 략)

시·군의회의원후보자등의 후
원회는 각각 합하여 선거비용
제한액에 해당하는 금액)
2
<u>국회의원후보자</u>
<u>등·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와 시·</u>
도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자치
도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자치 구·시·군의회의원후보자등
구·시·군의회의원후보자등 3 · ④ (현행과 같음)
구·시·군의회의원후보자등

3	후원회	가 하	산한	때에	=	コ
대표	자는	14일	이내여	게 그	사	실
을	관할	선거된	관리위	원회이	1]	신
고하	여야	한다.	다만	, 다음	<u>5</u>	각
호의	어느	. 하니	-에 하	당하는	三	경
우에	는 그	러하기	이 아니]하다		

- 1. (생략)
- 2. 국회의원의 임기만료, 대통 령후보자등·국회의원후보자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 자의 신분상실로 인하여 해 산되는 경우

④ (생 략)

③
1. (현행과 같음)
2
국회의원후보자
등·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및
시·도의회의원후보자등 또는
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후보자
<u>ㄷ</u>

④ (현행과 같음)